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만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52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2일

발 의 자: 유만희, 고광민, 김영철,
김용호,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 석,
박영한,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유정인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
- 초저출생 시대 임신·출산 관련 지원정책만큼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함.(안 제4조의4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제1호 중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을 “거주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 ----- ----- -----.
1. 신청일을 기준으로 <u>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u>	1. ----- <u>서울특별시</u> <u>시</u> ----- ----- ----- ----- ----- <u>거주</u> <u>하는</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관련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	다만,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를 변경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은 분명하나, 현 시점에서 관련 통계가 없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하여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함

※ (관련부서 의견조회)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6개월 이상 계속하여”를 삭제함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부서(양성평등담당관) 확인결과 기추진 사업예산(붙임 참고)으로 추가 지원대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회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붙임] 2024년 서울시 임신부 교통비 지원 예산 (본 개정안 제4조의4 관련)

□ 사업목적

- 교통약자인 임신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임신,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바우처 사용 용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등
- 소요예산: 33,496,056천원(전액시비)

□ 향후 기대효과

- 교통약자인 임신부 교통 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4년 예산내역	
사무관리비	○ 사업홍보, 매뉴얼 제작 등	= 20,000
	20,000,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14,000
	700,000원*20명	
사회복지사업보조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33,317,559
	- 22년~23년 미사용자	15,457,559
	77,288명*200,000원	
	- 2024년 사용 대상자	17,860,000
	(38,000*94%)*500,000원	
	○ 시스템 유지보수	= 86,497
	86,497,000원	
	○ 보조금 실적보고서 검증 용역	= 8,000
	8,000,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사업 홍보 등	= 50,000
	2,000,000원*25개구	

자료 : 2024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설명서 발췌